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인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303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김인제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민병주,
박강산, 박승진, 박칠성,
서상열, 송도호, 송재혁,
오금란,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최재란, 홍국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이동을 동반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필요한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행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병원동행, 이사동행, 마음동행 등 각종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시장에게 책무 부여(안 제3조)
- 다. 1인가구 등 이동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라. 동행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계획 수립(안 제6조)

마. 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서비스”란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이동지원 · 안내 · 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 보조금 교부 ·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동행서비스의 운영 · 관리를 위해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행인”이란 동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행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동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받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동행서비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 시행)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서비스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관리 · 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

4. 동행인의 자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동행, 이사동행 등 시민 맞춤형 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2.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동행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개인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3조(시장의 책무)	×	[규정단일 미영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를 강조한 규정으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¹⁾ 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	×	[규정단일 미영향] 계획 수립은 통상 기준 내부인력 등을 활용하여 수립하기에 해당규정 단독으로 발생시키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제7조(실태조사)	×	[재정소요 영향 미미] 실태조사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 내용 및 각종자료 등을 검토결과 해당비용 발생가능성 ²⁾ 은 낮을 것으로 보여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4	제8조(지원사업 등)	△	[사업확대 비용 발생예상] 동행서비스 사업은 일부 기추진 ³⁾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확대 사 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해당 소요비용은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구체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5	제11조(표창)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통상적 상황에 비추어 볼 경우 별도의 부상 수여 ⁵⁾ 는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6	제12조(협력체계 구축)	×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 규정은 통상 비용 수반요인 ⁶⁾ 이 없거나 있더라도 영향이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1) [노력의무규정 특성]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가령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함
- 2) [출연기관 연구 고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협약연구과제로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성과 개선방안』(2025. 4. 18. 발행) 등을 발행한 바 있어 이를 고려할 경우 향후 실태조사 또한 출연기관 연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추진할 경우 통상적인 실태조사 비용인 40,000~5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출연금연구는 서울시 출연금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 연구이므로 학술연구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소요는 없음
- 3) [기추진사업] 서울시 복지실 2025년 <서울시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운영> : 2,034,523천원
- 4) [입법취지 등 고려] 병원동행, 이사동행, 마음동행 등 각종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기추진사업 외 추가적인 사업을 별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5) [표창관련 재정소요 미미] 통상 시민대상 표창의 경우 부상(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참고)없이 표창장만 수여하기에 표창장 제작비(1인당 5,500원)정도의 소액만 소요(예외적으로 공무원 표창 시 일부 부상수여)되므로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6) [재정소요 영향 미미] 협력체계 구축(Ex. 업무협조 MOU)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Ex. 현수막, 입간판, 업무 협약서 제작 등)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동행서비스 사업은 서울시 관련부서(복지실 1인가구지원과) 문의결과 일부 기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안 제4조(적용범위)에 지원대상 등에 대해 추가 명시함에 따라 지원대상과 사업규모가 증가될 수 있고, 향후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한 각종 동행서비스를 추가로 추진할 경우 사업확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추계 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

- 확대되는 사업 특성상 다양한 지출결정요인(정책매각, 市예산한정성, 투자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행기관의 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당사안에 대해 검토·추진된 바 없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계 곤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